

석재산업의 전시·홍보 지원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
신청내용	전시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:		
	전시 시설 설치경비: 백만원(자체조달: 용자: 보조:)		
	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·대여 경비: 백만원(자체조달: 용자: 보조:)		
	홍보 프로그램 개발·운영 경비: 백만원(자체조달: 용자: 보조:)		
	신청금액: 백만원(보조: 백만원, 용자: 백만원)		
	사업기간:		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 2. 전통 석재제품 등이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
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서류심사 및 현장조사	➔	심사	➔	결정·통보
신청인		산림청·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						